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7
----------	-------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김영배 · 김병기 · 박광운
이해식 · 한병도 · 소병철
유정주 · 이수잔^배 · 이수진
이장섭 · 민형배 · 박홍근
이광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더하여 법 위반 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함.

이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산업안전지도관의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지도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안전지도관이 제1항에 따라 지도 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지도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지도관”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5조의2(산업안전지도관의 지</u> <u>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u> <u>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의3</u> <u>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u> <u>지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u> <u>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지도</u> <u>관을 위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u> <u>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 그 밖</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p> <p><u>③ 산업안전지도관이 제1항에</u> <u>따라 지도 업무 등을 하였을</u> <u>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u> <u>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u> <u>여야 한다.</u></p> <p><u>④ 산업안전지도관이 제1항에</u> <u>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u> <u>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u> <u>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산업</u> <u>안전지도관”으로 본다.</u></p>